

현재 지역을 중앙일보 홈으로 설정

AD 아시아나텔레콤

2011.4.29 Fri SE 41°F

지역별 중앙일보

뉴스 | ASK미국 | 블로그 | 한인장터 | 안내광고 | 업소록 | 여성중앙 | J비디오투

ASK미국 홈 | 전문가상담백과 | 이민생활사전 | 전문가 소개

통합검색 | 검색



LOCATION 홈 > 뉴스 > 이민/비자

이메일 | 프린트 | 기사목록 | -가 | +가 | 내 블로그에 담기

이민·비자 | 일반 | 본 기사에 대한 댓글 -0개-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J-2 비자로 있는 가족이 함께 영주권 받으려면? [LA중앙일보]

이동찬/변호사

기사입력: 04.25.11 20:41

▶문= 곧 취업이민 1순위 신청을 합니다. 저는 2개월 내 21세가 되는 자녀가 있고 2005년에 정부 지원을 받아 J-1비자로 미국에 온 적이 있으나 한국으로 귀국하여 2년 해외체류조건을 충족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 자녀는 J-1 방문자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J-2비자를 받고 미국에 온 후 신분을 변경하여 계속 체류하고 있습니다. 2년 해외체류조건이 자녀에게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저의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J 비자는 문화교환방문 비자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을 경우 J 방문자가 귀국을 해서 2년 해외체류조건을 충족하거나 이민국으로부터 이 조건을 면제받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J-2로 체류했던 가족에게는 2년 해외체류조건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J-1 방문자의 자녀가 21세가 넘거나 J-1 방문자의 배우자가 이혼을 하는 경우 국무성은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 해외체류조건 면제를 추천해 줍니다. 국무부의 추천만 있으면 이민국은 쉽게 면제를 승낙합니다. 즉 자녀분은 곧 21세가 넘기에 쉽게 2년 해외체류조건 면제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가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 21세가 될 동안 기다린다면 21세 미만 자녀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슈가 됩니다.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하면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의 나이는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때의 나이에서 이민 청원서의 계류기간을 빼서 계산합니다.

또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때부터 1년 내에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신청을 시도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인 경우 문호가 열려 있으므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는 시점이며 그 시점의 자녀의 나이에서 취업이민 청원서의 계류기간을 빼면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때의 자녀의 나이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분이 21세가 되기 전 취업이민 청원서만 제출하시면 자녀분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21세가 되더라도 아동신분보호법에 의거하여 21세 미만 자녀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시고 자녀분이 21세가 되면 자녀분의 해외체류조건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시고 승인되면 자녀분은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을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반드시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1년 내에 하셔야 합니다.

▶문의: (213)291-9980

▶"모든게 사라졌다"... 토네이도 생존자들 망연자실

▶산불 났는데, 편안히 앉아서 불끄는 소방관

- 김준서 변호사 취업비자, 취업이민, 투자비자
EB-5전문 법무법인 영주권 취득 안내 대령...
핸드폰으로도 저렴한 요금 핀스립, 스피드 다...
박명석 이민변호사 무료온라인상담, 취업/투...

Chicago, Irvine, San Francisco, LA, Las Vegas, OC, Atlanta, San Diego, !

365 Hananet | 여행지 | 골프코스 | 쿠폰 할인

Palamesal Resort | 골프 2명+호텔 1박: \$119(일-목)/\$149(금-토)

- [고급 상점 및 백화점] 갤러리아 갤러리스 TX
[세계적인 꿈의 동산] 디즈니랜드 CA
[테코파 미네랄 온천정] 인요카운티 CA
[다운타운 최대의 쇼핑상가] 16가 쇼핑몰 CA
[하얀 나선형의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NY

TALK! | 한인장터 | 묻고 답하기 | 한인업소록

TEXT | 초강력 천연 항생제 프로바카리-X 유학생에 관한 모든 것!

Stella's Perfection Makeup | 눈썹, 아이라라인, 입술 반영구 화장 전문 | 213-880-5759 | HOT EVENT | 잘못된 영구화장 및 바다문신 제거 | Eyebrow Remover \$50 (회 가격)

많이 본 뉴스 | 전체 | 이민-비자 | 댓글최다

- 1 美 중남부 토네이도 강타, 200명 이상 사망 (종합)
2 노태우 전 대통령 몸 속 6.5cm 침(針) 논란 확산
3 윌리엄 왕자 결혼식이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
4 [남기고] 청춘은 맨발이다 ④ 조영남
5 심은하, 최근 모습 공개 '췌 커트도 청순해'
6 초저녁 명동서 美 여성 관광객에 20대 고한 칼부림
7 美 토네이도 강타..사망자 300명 육박(종합2보)
8 미국 중남부 4개주 휩쓴 토네이도로 72명 사망 (1보)
9 [남기고] 청춘은 맨발이다 ⑥ 북으로 간 신상옥 감독
10 안젤리나 졸리 부부, 지난해 자녀 양육비 1천만 달러

ASK 미국 | 질문하기

여기서 제공하는 무료부동산 등 세미나 매...
고객책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안되나요.

- ▶ 강호동에게 "행님아~" 외치던 포동이, 몰라보겠네
- ▶ **정리** 5월의 시작과 함께 HOT한 마켓 세일!
- ▶ **ASK** 식당 금고에서 돈 훔쳐간 매니저를...

- ▶ 노태우 전 대통령 몸 속 침(針)...누가?
- ▶ **美교수**, 마지막 강의후 "일본 가서..."
- ▶ **BLOG** 스포츠 맨스의 매력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분들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헬스코리아
HEALTH KOREA

무/료/전/화: 888.407.4986

관련기사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경범죄 기록 시민권신청 불...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스폰서 회사가 적자인데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이혼 후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범죄로 인한 추방을 피하려면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J-1 비자 상태로 투자이민 ...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E-2 비자의 거절과 해결방법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가정폭력기록과 시민권 신청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망명 거절 후 추방절차, 영...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아동신분보호법을 통한 영...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불법체류 후 한국에서 이민...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J-2 비자로 있는 가족이 향...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일입국 친구의 아이 입양하...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종업원 아들 E-2 신분 유지...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비자 거부당한 배우자 초청...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30만달러로 E-2 받을 수 있나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불법으로 180일 넘게 취업...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J-1 비자의 2년 해외체류조건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245조항을 통한 영주권 신청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 후 ...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비윤리적인 범죄가 시민권 ...
-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임시 영주권자가 영주권 재...

뉴스홈으로 주 맨위로

이메일 | 프린트 | 기사목록 | 내 블로그에 담기

나도 한마디...!

•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댓글 입력창

감정표현: 😊 😐 😢 😡 😠 😤 😥 😦 😧 😨

글 올리기

HOT PHOTO

- 런던은 노숙증
- 김혜수 달았네
- 홈푸드 최대 \$5 Off 쿠폰
- 버버리 향수&로션 \$36!
- FILA 반값할인의 기회!

YELLOW PAGE | LOS ANGELES | 검색 | 옐로우페이지 광고상품안내 | 업체무료등록/수정 안내 | 업체정보 삭제요청

이민법 전문 임상우 변호사	자동차/상해법 브래드리 변호사 그룹	이민법 전문 홍은진 변호사	스테이트 팜 헬렌 리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트 팜 크리스티 리 인더스트리	스테이트 팜 제인 리 어바인	스테이트 팜 김술라 글렌데일	

KoreaDaily
JoongAng Ilbo

COPYRIGHT JIMNET USA All Rights Reserved
690 WILSHIRE PLACE LOSANGELES CA 90005
TEL:1-213-368-2500 FAX:1-213-389-6196

회사소개 | About us | 인재채용 | 기사제보 | 고객센터 | 광고문의

JOINS AMERICA
POWERED BY JOINS AMERICA

- ↳ 중고노트북파는곳이 어디있나요?
- ↳ 워싱턴운전면허에 관하여...
- ↳ 카드빚과 컬렉션
- ↳ seller's permit
- ↳ 불행하게 은퇴할 시점에....(전문가 답변)
- ↳ 한국가는 비행기 탈때

미블로그 + 더보기

미블로그

마늘에 주목하는 이유
한국인의 필수재료 마늘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자

- 1 세계인이 '마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 2 자식 키우는 부모의 가장 큰 고민
- 3 대피할 시간이 60초밖에 없다면?
- 4 박지원""나는 중복주자 그리고 빨강이다"...
- 5 나는 참으로 고달프게 살아왔구나.
- 6 어느 아빠의 감동적인 이야기
- 7 여자에게 좋은 시금치(Apr/11/2011)
- 8 각국 여행 정보
- 9 환상적인추상누~드
- 10 꽃 분재 감상

한인장터 구인 렌트리스 중고물품 자동차

패럴?챈쨍챈 햅쨍쨍쨍?짱?햅쨍햅햅햅 햅...

금,토,일 팟타임 스미맨 구합니다.

건축 현장에서 일하실 기술자 추가직종 필...

한라공조 미국법인 직원 채용

부에나파에 위치한 척추병원에서 secretary ... (구인)

Looking for Assistant Project Manager- Un...